

2022. 04. 25(월). 10:00
제28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< 안건명 >

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
전 문 위 원

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3일 이상기 의원 등 6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「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에 따라 2022년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·지원 등을 통해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기준을 명확화함 (안 제3조)
- 나.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·지원을 위하여 기금의 타 회계 전출 근거를 마련함 (안 제6조의2)
- 다. 변경된 관계 규정 명칭을 반영함 (안 제14조 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 (행정안전부 예규 제171호)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입법예고 결과(2022. 4. 14. ~ 4. 20.) :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지원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방법에 대한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, 기금 긴급 사용 발생 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불명확한 관계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판단 됨.

2022년 4월 22일

산업건설전문위원 이 명 구

붙임

관계법령 발췌서

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9조의2(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)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금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수립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☑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(행정안전부 예규 제171호, 2021. 7. 19. 시행)

〈내부거래〉

구 분	세 출 (주는회계)			세 입 (받는회계)		
	회계별	대 응 과 목		회계별	대 응 과 목	
전입. 전출금	일반/기타	702-00	기금 전출금	기금	721-03	기타회계전입금
	공기업	공기업 과 목			721-01	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
		상·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	316, 403-02			
기금	701-00	기타회계전출금	일반/기타	721-04	기금 전 입 금	
	공기업	공기업 과 목		공기업	공기업 과 목	
		상·하수도	613-01, 672-01, 672-02, 672-03, 672-04, 173-02, 175-01		공영개발	672-01, 672-02, 672-03, 672-04, 174-01
기금	702-00	기금 전출금	기금	721-04	기금 전 입 금	

※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하는 특성 상,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가능함에 유의

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75조의2(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사용에 관한 특례)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·취약계층에 대한 지원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·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지방재원(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)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.